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22
----------	-------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 의 자 : 한창민 · 황명선 · 정혜경
용혜인 · 박정현 · 윤종오
전종덕 · 김 윤 · 김선민
최혁진 · 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사모펀드를 다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하여 투자자 보호 및 감독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

2021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설명의무 및 감독기관 보고의무가 일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높은 레버리지를 동원하여 기업을 인수한 후 재산을 유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통제하거나 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회원국이 그 내용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유럽연합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은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여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사모펀드 전반에 걸쳐 보고의무 및 공시의무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EQT AB, CVC 캐피탈 등 유럽의 사모펀드들은 연례보고서 및 주요 운용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투자자 및 일반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공시·보고의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AIFMD를 참고하여 강화하는 한편, 이해상충 방지 및 레버리지 한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비율을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재무상황을 포함하여 총 차입한도가 적용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1항·제8항).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의 자산을 유출하기 위한 결의에 관하여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7항 신설).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지급받은 보수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3항 및 제249조의12제2항).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황 및 지급받은 보수 등을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9항 및 제
249조의14제15항 신설).

마.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에게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영업보
고서 작성·제출 및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함(안 제249조의8제1항·
제2항, 제249조의14제14항 신설).

바.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대상기업 간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이해상
충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행위에 대
해 거래 내용 및 내부통제 절차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249조의16제5항·제6항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00분의 400”을 각각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보수 지급 현황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된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산정방식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총액, 수령자의 수 및 그 산정기준

⑦ 「상법」 제341조, 제462조 및 제4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다.

1. 자기주식의 취득

2. 이익의 배당

3. 자본금의 감소

4. 그 밖에 다른 회사의 자산을 유출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자본
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을 감소시키는 사항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금액과 다른 회사의 계
산으로 차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
른 회사의 자산총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총액 합산한 금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투자

2. 다른 회사 임원의 임면 등 다른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
산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3. 다음 각 목의 보수 지급 현황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된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산정방식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총액, 수령자의 수 및 그 산정기준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9조의8제1항 중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를 “제83조까지, 제90조제3항·제4항”으로,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를 “제2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9조의12제2항제4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집합투자재산의 주요 자산구성 내역 및 집중도
5. 유동성 위험 및 이에 대한 관리 계획
6. 시장위험·거래상대방위험·운영위험 등 주요 위험 요인 및 그 대응방안
7. 운용성과, 수익률 등 운용경과에 관한 사항
8. 다음 각 목의 보수 지급 현황

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된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산정방식

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과 투자대상회사의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총액, 수령자의 수 및 그 산정기준

제249조의14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제88조, 제90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투자자”는 “사원”으로 본다.

⑮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3. 다음 각 목의 보수 지급 현황

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된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산정방식

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과 투자대상회사의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총액, 수령자의 수 및 그 산정기준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9조의16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부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이해상충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대여하는 행위
2. 유가증권 또는 유·무형자산을 이전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하는 행위

⑥ 업무집행사원은 제5항에 따른 내부거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이해상충 발생 여부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
3. 그 밖에 내부거래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9조의18제2항제4호 중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0제1항 중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를 “제241조”로 한다.

제446조제14호 중 “제88조”를 “제88조(제249조의14제1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49조제1항제34호 중 “제186조제2항에서”를 각각 “제186조제2항 및 제249조의14제14항에서”로 한다.

별표 2에 제7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7의2. 제249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별표 6에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8까지를 각각 제15호의5부터 제15호의11까지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 제15호의12 및 제15호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249조의14제14항에서 준용하는 제88조를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

15의3. 제249조의14제14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5의4. 제249조의14제15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5의12. 제249조의16제5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15의13. 제249조의16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8제1항·제2항 및 제24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 중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다음 회계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제249조의7제1항·제8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④ (생략)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보수 지급 현황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된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산정방식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총액, 수령자의 수 및 그 산정기준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⑥ (생략)

<신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상법」 제341조, 제462조 및 제4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에 속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2

<신 설>

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자기주식의 취득

2. 이익의 배당

3. 자본금의 감소

4. 그 밖에 다른 회사의 자산을 유출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감소시키는 사항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금액과 다른 회사의 계산으로 차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른 회사의 자산총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총액 합산한 금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신 설>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투자

2. 다른 회사 임원의 임면 등 다른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3. 다음 각 목의 보수 지급 현황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된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산정방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구에 대한 특례) ①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	<u>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총액, 수령자의 수 및 그 산정기준</u> <u>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 ----- ----- ----- -----.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구에 대한 특례) ① ----- ----- 제83조까지, 제90조제3항·제4항----- ----- ----- ----- ----- ----- -----
---	--

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7항·제8항,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

-----제241조-----

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다음 각 호의 조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생략)

2. 제88조.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생략)

4.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

②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삭 제>

아니한다.

5. (생략)

③ ~ ⑨ (생략)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① (생략)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집합투자재산의 주요 자산구
성 내역 및 집중도

5. 유동성 위험 및 이에 대한
관리 계획

6. 시장위험 · 거래상대방위험 ·
운영위험 등 주요 위험 요인
및 그 대응방안

7. 운용성과, 수익률 등 운용경
과에 관한 사항

8. 다음 각 목의 보수 지급 현
황

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집합투
자재산으로 지급된 보수
(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
수를 포함한다) 및 그 산

4. (생략)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 ⑬ (생략)
<신설>

<신설>

정방식
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과
투자대상회사의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총액, 수령
자의 수 및 그 산정기준
9.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에 대해서 제88조, 제90조제1항
·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업무집행사
원”으로, “투자자”는 “사원”으
로 본다.
⑮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
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과 관련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시하여야 한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
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 ④ (생략)

<신설>

대상자산의 내용

3. 다음 각 목의 보수 지급 현황

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된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산정방식

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과 투자대상회사의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총액, 수령자의 수 및 그 산정기준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

<신 설>

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
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부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이해상충을 파악·평가·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의 수립 및 운영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
를 갖추어야 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대여하는
행위

2. 유가증권 또는 유·무형자산
을 이전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래를 하는 행위

⑥ 업무집행사원은 제5항에 따
른 내부거래행위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이해상충 발생 여부 및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절차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

3. 그 밖에 내부거래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1. ~ 13. (생략) 14.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 15. ~ 64.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3. (생략)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의2. ~ 49. (생략) ② ~ ④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88조(제249조의14제1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15. ~ 64.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 ----- ----- -----. 1. ~ 33. (현행과 같음) 34. -----제186조제2항 및 제249조의14제14항에서--- ----- -----제186조제2항 및 제249조의14제14항에서----- ----- ----- ----- 34의2. ~ 4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